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14 선고 2021가단4028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9. 14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. 7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2020. 7. 7. 접수 제72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박영순

[별지1]

목 록

1. 자동차등록번호 :
1. 제원관리번호 : B66-1-02439-0001-3317
1. 차 명 : 한국쓰리축2톤크레인집게트럭
1. 차 중 : 화물 대형
1. 차 대 번 호:
1. 원 동 기 형 식 : D6GB
1. 최초등록일 : 2018. 6. 28
1. 최 종 소 유 자 : (주)
1. 사 용 본 거 지: 대구광역시 달서구

[별지2]

청 구 원 인

1.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, 자동차명의이전

가.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(대표자 사내이사 D)가 압축파지 등의 물품을 공급해 주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 및 부가세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2019. 7. 7.부터 2020. 4월경까지 각종 압축파지, 파지, 국판 등의 물품을 공급해 주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76,288,450원 및 부가세 7,628,845원이 발생 되었으나 물품대금 지급에 불응하였습니다.

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20. 6. 30.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0차186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불응시켜 같은 법원 2020가소2602호 소 제기하여 2021. 6. 16. 금 7,628,8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4. 11.부터 2020. 8. 2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.

나. 소외 C 주식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20. 7. 7. 피고에게 자동차 명의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소외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,628,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자동차 명의이전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.

3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가.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,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와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). 또한,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(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).

나. 소외 C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될 당시 적극적인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밖에 없었고,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발생되고 현실적으로 물품대금 청구되자 2020. 7. 7. 소외 C 주식회사 대표 사내이사 D은 친부(父) E이 대표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피고회사에게 자동차 명의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. 소외 회사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무자력상태에서 집행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명의등록처분을 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

에 대하여 손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소외 회사, 수익자인 피고의 손해의사도 추정됩니다.

다.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 명의등록이전계약은 손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. 7. 7.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